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7.
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4월 10일, 강선우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4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8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25. 8. 18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

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(2026. 3. 12.)

상정, 축조심사

제434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(2026. 4. 28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34회국회(임시회 · 폐회중) 제1차 전체회의(2026. 4. 29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강선우의원)

현행법은 증권에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

으나,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.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지민)

현행법 제102조제4항은 국민연금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관리·운용할 때 ESG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,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ESG 투자를 의무화하려는 것임.

그런데, 보험료율을 인상한 최근의 모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은 제102조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‘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’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일부 투자방법에 대하여 ESG를 의무적

으로 고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인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미칠 영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.

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제10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모든 투자방법에 대하여 ESG 투자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인데, 수시입출식예금(Money Market Deposit Account; MMDA) 등 현금성 자산은 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속하게 유동화될 수 있는 현금성이 중요하다는 점(제1호),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현행법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매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의 간접투자 방식에 의하게 되는 점(제2호), 금융투자상품지수(예: KOSPI200)는 투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(제4호) 및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‘기금 증식 사업’ 중에는 ESG 투자 적용이 부적합한 투자방법·대상(예: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)이 혼재된 점(제7호)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.

참고로, 제3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(2014. 11. 10.)에서는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·신탁’(제1호), ‘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’(제4호) 및 ‘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’(제7호)을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법에서 제외하

고, 현행과 같이 ‘증권의 매매·대여’(제3호)의 투자방법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에만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이수진)

-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의 최대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며 관리·운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.
- ESG 투자와 기금투자수익률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고, 국민연금기금 관리·운용 시 ESG를 고려함으로써 수익성에 미칠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ESG 투자의 원칙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.
-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‘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’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·운용

하는 경우에도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